

積荷保險 危險分類 改善에 관한 研究

— 品目分類를 中心으로 —

柳 炯 均

(保險開發院 企劃擔當役)

目 次

第1章 序論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目的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第2章 危險分類

1. 危險分類의 意義
2. 危險分類의 目的
3. 危險分類의 方法

第3章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 概要 및 問題點

1. 積荷保險 料率體系의 成立
2. 現行 品目分類 概要
3. 品目分類 問題點

第4章 新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

1. HS概要
2. CCCN 分類와의 比較
3. 積荷危險 品目分類와의 比較

第5章 積荷保險 品目分類 改善方案

1. 改善方向
2. 調整案

第6章 結論

第1章 序論

1. 問題의 提起 및 研究의 目的

무릇, 積荷保險 뿐만아니라 모든 保險種目에서 適正하고 合理的인 危險分類(risk classification)는 매우 重要하고도 어려운 問題이다. 그것은 危險分類가 適正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危險의 同質性도 確保할 수 있으며, 保險經營이 可能할 수 있는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危險分類가 지나치게 異質인 危險集團이 包含되는 限度까지 廣範圍하여서도 아니될 것이고, 또 지나치게 細分化되어 合理的인 保險料算出의 基礎가 되는 大數의 法則(law of large numbers)의 適用을 그르쳐서도 아니될 것이다. 더우기 危險分類의 問題는 窮極의으로는 保險料率의 差別化로 歸結되는 것이기 때문에 適正한 危險分類에 따른 公正한 差別은 保險事業者 뿐만아니라 保險契約者의 保護를 위해서도 要求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現行 우리나라 積荷保險에서의 危險分類上에 있어 나타나는 問題點을 提起하고 그에 대한 改善方案을 導出해 보고자 하는 것이 本研

究의 目的이다.

먼저 危險分類에 있어 構造的인 問題點은 料率의 監督當局의 認可를 받아야 하는데서 나타나는 問題 즉 彈力的인 危險分類가 어렵다는 점이나 이 問題는 制度的인 것이므로 論外로 한다. 또 輸入貨物과 輸出貨物의 料率이 二元化되어 있으나¹⁾ 이 또한 政策的인 見地에서 輸出貨物의 國際競爭力 確保 및 國內付保를 增大하기 위한 것이므로 論外로 한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우리나라 積荷保險에서의 危險分類는 他保險種目の 危險分類와 比較한다면 보다 單純하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積荷保險의 경우 同一한 危險은 전혀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現行 積荷保險에서의 危險分類는 크게 保險條件 航海地域, 品目を 주로 하고 그외에 運送用具, 貨物의 包裝狀態, 船積 또는 荷役港의 施設에 따라 危險을 分類하여 料率을 差等適用하고 있다.

그러나 積荷保險에 있어서는 積荷라는 用語 自體에서 보듯이 船舶에 積載되는 貨物의 分類가 가장 重要的인 것이다. 實際로도 貨物을 除外한 他部門의 危險分類는 比較的 簡單하며, 現實的인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積荷保險의 危險分類를 가장 問題點이 많이 나타나는 貨物의 分類 즉 品目分類上의 問題點 提起 및 그에 대한 改善方案을 導出하는 것으로 局限하기로 한다.

研究方法으로는 現行 積荷保險의 品目分類方式과

新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를 重點적으로 比較·檢討한 후 이를 積荷保險 品目分類에 어느 程度 受容·反映할 수 있을 것인가를 考察한다. 또 現實적으로 危險이 相異하다던가, 物動量등을 考慮할 때 細分化의 必要가 있는 品目에 대하여는 品目別 電算코드가 賦與되어 實績分析이 可能的인 88-89年 保險統計 實績을 參考로 하며, 其他 實務上 提起되는 問題點의 解消에 主眼點을 두기로 한다.

이에 따라.

第2章에서는 危險分類에 대하여 意義, 目的 및 方法 그리고 料率과의 關係등을 概觀한다.

第3章에서는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體系 및 그 問題點을 살펴본다.

第4章에서는 新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를 考察하고 積荷保險의 品目分類와 比較, 檢討한다.

第5章에서는 現行 品目分類에 대한 效果的인 改善方向 및 品目分類調整案을 提示한다.

第6章에서는 지금까지의 內容을 要約整理하고 改善方案의 期待效果를 豫測한다.

第2章 危險分類

通常적으로 危險分類(risk classification)는 언더라이팅의 하나의 過程으로 이루어진다. 언더라이팅의 過程은 모든 保險種目に 있어 共通的으로 4가지 機能을 包含한다. 즉 危險의 選擇, 危險의 分類 및 料率算定, 保險證券樣式, 保有와 再保險이 그것

1) 輸出貨物에 대하여는 保險事業者 自由料率로 되어 있으며 <손심520-6345(86.7.6)> 自由料率制의 實施에 따른 不作用 즉 危險引受技術 缺如 및 過當競爭에 따른 問題點 解消策으로 마련된 海上保險料率算定指針 <손보2234-487(89.10.5 신규제정)>에 의거 정기적인 料率調整을 실시한 결과 輸入貨物과의 料率隔差는 同一品目, 同一航海區間, 同一條件임에도 平均 約30%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

이다.²⁾ 이가운데, 危險의 選擇과 危險의 分類는 언더라이팅의 始發點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만큼 重要하다. 그중에서도 危險의 適切한 分類 및 그에 따른 適正한 料率決定은 언더라이팅에 있어 必須不可缺한 機能이다.

1. 危險分類의 意義

危險의 分類란 危險을 그 性質, 크기, 種類, 發生可能性등을 基礎로 여러가지 그룹으로 區分, 整理하는 것을 말한다. 즉 積荷保險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모든 危險을 同一하게 取扱할 수는 없으므로 品目別, 地域別, 條件別등의 分類基準에 따라 여러 危險群으로 分類하여 각 危險群別로 相異한 料率을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2. 危險分類의 目的

保險에서 危險을 分類하는 目的은 危險을 同質의인 集團으로 分離시켜, 保險契約者로 하여금, 保險料負擔에 있어 均衡을 이루게 하는데 있다. 즉 各契約者가 類似危險別로 危險을 分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確實한 方法은 모든 危險을 보다 작고, 同質의인 集團으로 分離하는 것이며 危險分類는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技法인 것이다.

大部分의 危險은 서로 異質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危險들이 重要的 面에서 서로 差異가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렇게 異質의인 要素로 構成되어 있는 危險들을 適切히 分類하지 않고 單純하게 處理하는 保險事業者의 경우는 危險을

適切히 分類하고 그에따른 適正한 料率을 賦課하는 保險事業者에 비하여 平均以下の 不良保險體가 加入함으로써 損害率의 惡化를 가져오고 그 結果 支給不能 또는 料率의 引上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반면에 適正한 危險分類를 取하는 경우에는 保險事業者의 經營도 安定性을 確保할 수 있을 것이며, 保險契約者로서도 料率의 衡平을 기하게 되어 得이 되기 때문에 合理的이고 適正한 危險의 分類가 要求되는 것이다.

3. 危險分類의 方法

一般的으로 危險分類에 있어 保險種目別로 分類하거나 혹은 擔保範圍에 따라 分類하는 것이 基本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危險分類는 그 自體가 지나치게 相異하거나 危險度에 있어 큰 差異가 나기때문에 이 程度의 分類는 至극히 常識的이며 當然한 것이기도 하다.

通常的으로 保險者는 危險을 보다 細分하기 위해 여러가지 分類方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各危險群을 評價할 수 있는 媒介變數(parameter)를 設定하는데 이 變數는 保險種目別로 差異가 있으나, 積荷保險의 경우는 通常 貨物의 性格, 航海地域, 運送用具, 契約者의 過去實績등이 包含된다. 分類에 있어 留意해야 할것은 媒介變數를 지나치게 嚴格하게 設定함으로써 危險群이 過度하게 細分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保險은 危險의 程度를 같이 하는 多數의 同質危險을 必要로 하는데 어느 危險群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에는 이러한 基本的인 前提條件을 充足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犯

2) Robert B. Holtom,
Underwriting(Principles and Practice)
(National Underwriter Publication 3rd Printed 1977) P.137

罪保險에 있어 酒店과 우유판매업소와는 危險度가 相異하므로 서로 다른 危險群으로 分類하며 따라서 料率도 差異가 있다. 그러나 自動車保險의 경우, 契約者의 눈(眼), 모발의 色, 自動車의 色相等을 危險 分類의 基準으로 삼아 危險을 지나치게 細分하는 것은 現實의으로 어려울뿐 아니라 多數의 同質危險 確保라는 分類의 大原則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危險分類와 料率과의 關係는 相互依存의이라 할 수 있다. 料率의 適用對象이 되는 危險分類가 定立되지 아니하고는 料率이 存在할 수 없으며, 따라서 分類의 主目的은 適用할 料率을 決定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分類를 決定함에 있어 考慮하여야 할 要素가 많이 있는데 그중 重要的한 것은 單純性(simplicity)과 理解容易性(understandability)³⁾이다. 그 理由는 募集人, 언더라이터등이 分類의 定義를 正確하게 알지 못하면 分類를 잘못 適用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競爭도 相當히 重要的한 要素가 된다. 어느 保險會社의 分類體系가 競爭社의 分類體系와 相異할 경우 價格競爭上의 利点이 생길 수도 있고 반면에 競爭上 不利益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保險會社는 注油所에 대해 建物構造, 防火施設등을 考慮하여 10個의 危險群으로 分類하고 있는데 반하여 A라는 競爭社는 모든 注油所를 하나의 危險群으로 分類하여 料率을 適用한다면 A社는 正常利潤을 얻기 위해 平均料率(大略 10個危險分類를 가진 競爭社의 5等級에 該當되는 料率)을 適用하여

야 할것이다. A社는 分類의 單純性으로 인한 簡便性등은 얻을 수 있으나 價格의 差異로 優良物件은 引受할 수 없고 不良物件만 引受하게 될것이며 따라서 A社는 保險料率을 引上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不適當한 平均料率이 될 수 밖에 없고 結果的으로 引受할 危險이 거의 없게 될것이다.

危險의 集團化 또는 同種分類를 하는데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通常의 損害發生性向을 基礎로 하므로 統計가 蓄積되고 知識과 理解가 增進될 때마다, 分類가 再定義되고 補完될 수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에도 危險分類는 合理性, 公平性を 充足하고 競爭的인 不利益을 피하기 위하여 分類數를 最少化할 必要性과 分類의 充分한 數를 確保하여야 할 必要性사이에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⁴⁾

危險分類는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은 原則에 附合되도록 分類되어질 것이 要請되고 있다.

첫째는 分離性(separation)의 原則으로 各各의 危險等級은 損害의 頻度및 크기에 影響을 받는 特定性向에 의하여 明確히 정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特定性向은 判別하기 쉽고, 被保險者등에 의해 隱弊되거나, 操作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둘째 同質性(homogeneity)의 確保로서 同一危險等級間의 特定性向이 同質일 것이 要求된다. 이것은 多少 理論的인 것으로서 完全히 同質的인 危險의 存在는 거의 不可能하며 지나친 危險의 細分化는 保險의 成立要件인 大數의 法則을 沮害하여, 料率의 安定性を 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現實의으

3) Robert B. Holtom, 前掲書 P.140

4) S.S. Huebner, Kenneth Black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3rd Printed, P.576
(London:Prentice-Hall International)

로 類似한 危險들로 集團化(grouping)하는 것이 不可避하다.

셋째는 危險分類를 確定할 수 있도록 充分하고 合理的인 經驗値를 갖추어야 한다. 過去의 經驗이 未來의 費用을 豫測하는 基本이 되기 때문이다.

네째 社會的 受容性(social admissibility)의 原則이다. 예를 들어 黑人과 白人間에 危險率의 差異가 數理的으로 立證된다 하여도 이를 區分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動機賦與價値(incentive value)가 있어야 한다. 즉 損害防止를 促進권장할 수 있도록 分類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危險分類의 여러 基準 및 方法들을言及하였으나 이를 要約 整理한다면, 危險分類는 公正하고 安定的이어야 하며, 損害發生可能性등을 充分히 고려하여야 하나, 어느 경우에도 同質의 危險이 多數 確保하여야 한다는 原則과 均衡을 이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第3章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 概要 및 問題點

1. 積荷保險 料率體系의 成立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부터 現在의 品目分類體系를 施行하게 되있는가 를 더듬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現行의 貨物群別 料率體系로 改編된 것은 財務部 保險1223-435(76. 3. 12)에 의한 “積荷保險 料率改定 및 船舶保險 還給 制度廢止 認可”에⁵⁾ 따른 것이다. 當時까지의 積荷 保險料率은 처음부터 어떤 統一의이고 綜合的인 原

則아래 制定된 것이 아니고 8·15解放이후 30여년간 積荷保險을 營爲하여 오는 過程에서 그때 그때 必要에 따라 散發的으로 算出된 料率로서 整備할 要請이 提起되게 된것이다. 當時의 改編 및 改定中 主要한 것중의 하나가 이제까지의 一般貨物과 特殊貨物의 區分을 廢止하고 21種의 貨物群別 料率體系로 改編한 것이며 이當時 貨物群은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品目表, 國際標準 付保一覽表 및 協會 統計分類表를 參考하여 區分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改編은 積荷保險料率書의 體系化라는 肯定的인 側面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改編理由에서 指摘된 問題點들을 完全히 解消할 수 있는 本質的인 體系改編이라기 보다는 從前의 積荷保險 料率書를 修正·補完하였다고 보는 것이 適合할 것이다. 그 후 3次에 걸친 料率體系改善 및 調整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現行品目分類 概要

現行 積荷保險에서의 品目分類는 貨物을 性質, 危險度등을 考慮하여 分類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크게는 一般貨物과 其他貨物로 區分하여 一般貨物의 경우는 “섬유류 및 수모류”에서 “유리 및 요업제품”에 이르기 까지 17個群으로 되어 있으며, 各 群別로 特性에 따라 다시 細分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보다 效率的인 危險分類를 위하여, 貨物의 物動量 등을 考慮하여 特定品目, 또는 貨物群으로 細分하여 適用하고 있다. 따라서 便宜上, 17個 品目群을 大分類, 이를 細分한 것을 中分類, 그리고 이를 다시 貨物群, 또는 特定品目으로 區分하여 品目코

5) 이措置는 1975년 5월2일자 財務部の “損害保險 料率改編 및 調整(보험1223-698)” 指示에 따라 全體 損害保險料率 改編作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드를 賦與한 것을 小分類로 言及하기로 한다. 其他
貨物은 “貨幣, 貴金屬 및 寶石類”등 6個 品目群으로

區分되어 있다. 現行 品目分類를 나타내면 <表 I
>⁶⁾과 같다.

<一般貨物> : 201-217

<表 1>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備考
201. 섬유류 및 수모류	201-1 製品 : Goat Hair : Yarn : 合成織物 : etc. 201-2 Raw Cotton 201-3 Raw Silk 201-4 Wool	201-1-1 원섬유 201-1-2 원사 201-1-3 섬유제품 201-1-99 기타	
202. 모피 및 피혁류	202-1 Raw Hide, Skin, Leather		
203. 곡물류 및 유채류	203-1 Grain:Barley : Maize : Wheat : Oil Seeds:Sesame : Linseeds :	203-1-1 Grain 203-102 Oil Seeds	
216. 기계 및 기기류	216-1 일반기계류 및 부품 : : : : : : 216-2 가정용전자, 전기제품 : : : :	216-1-1 사무용기기 216-1-2 방직용기기 216-1-3 금속·공작용기계 216-1-4 산업용일반기계 216-1-5 전기기기류 216-1-99 기타 216-2-1 시계 216-2-2 가전제품 216-2-3 가정용 기계류 216-2-99 기타	

6) 輸入 積荷保險料率書(損害保險料率算定會 1987. 1. 1)

海上保險統計資料作成要綱(損害保險料率算定會 1989. 4. 5)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備考
217. 유리및 요업제품	216-3 산업용전자, 전기제품	216-3-1 통신광학기계, 제측기	※ 16-1에서 계 기된 품 목제외
	⋮	216-3-2 의료기기	
	⋮	216-3-3 컴퓨터및 관련부품	
	⋮	216-3-4 영상재생기, 사진기기	
	⋮	216-3-5 건반악기류	
	⋮	216-3-99 기타	※ 타이어 제 외
	216-4 자동차및 부품	216-4-1 승용차	
	⋮	216-4-2 자전차	
	⋮	216-4-3 자동차부품	
	216-5 증장비류	216-5-1 항공기및 부품	
	철도용기관차	216-5-2 철도용기관차및 부품	
	항공기	216-5-3 선박및 부품	
	⋮	216-5-4 Plant 기자재	
	⋮	216-5-5 Container	
	Plant	216-5-99 기타	
	217-1 Glass	217-1-1 유리(제품포함)	
	⋮	217-1-2 요업제품	
	Porcelain		
	⋮		
	Stone Products		

<其他貨物> 301~306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備考
301. 화폐, 귀금속및 보석류	301-1 Bank Note		
	⋮		
	귀금속		
	⋮		
	유가증권		
302. 이사회물	302-1 Household Goods	⋮	
303. 雜貨	303-1 가족제품		
304. 공산권 통과화물	304-1		
305. 차관계약	305-1		
306. 군수물자, 방위산업물자	306-1		

3. 品目分類 問題点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上 나타나는 問題点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把握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主要한 問題点을 指摘한다면 다음과 같다.

가. 分類基準, 解釋原則의 不在

品目分類를 위한 分類基準이나, 解釋原則이 없으므로 品目에 따라 所屬群을 決定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따라 適用料率을 둘러싸고 保險者相互間 또는 保險者와 保險契約者間 異見이나 不滿이 露出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우기 品目群別로 代表的 品目을 例示하거나, 主要品目を 羅列하고 있을 뿐이므로 特히 揭示되지 않은 品目에 대하여 어떻게 어느 品目群으로 分類해야 할지 어려운 實情이다. 이러한 점은 過去 積荷保險 料率適用關聯 質疑件中 相當數가 品目分類에 따른 料率適用을 둘러싼 것이라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즈음은 複合的인 品目, 즉 各品目群의 性格이 結合된 物品, 다시 말하면, 原材料 또는 半製品 등이 여러가지로 結合된 品目들이 出現하고 있기 때문에 現在와 같이 分類基準이나 解釋原則이 없는 경우 正確한 品目分類를 期待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具體的인 例를 든다면, 機械類의 경우 一般機械類, 産業用電子 電器製品, 所謂 精密機械類 등 5個의 中分類로 되어있으나, 一般機械類와 精密機械類의 限界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分類여하에 따라 適用料率에 있어 현저한 差異가 發生되기 때문에 當事者間에 紛爭이 일어날 素地가 많다.

料率制度가 保險事業者의 自由料率인 경우에는 上記 問題点은 比較的 적다고 할 수 있으나, 料率水

準이 一般에 公表되는 認可料率制下에서는 品目分類를 위한 分類基準이나 解釋原則이 없다는 것은 큰 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나. 品目分類方法上的 問題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76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貨物群別 料率體系를 갖추었으며 그후 必要에 따라 品目の 追加 또는 削除, 品目群의 吸收·統合 등의 補完을 통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品目羅列方法으로는 危險에 따른 언더라이팅의 前提가 되는 品目分類는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關稅및 貿易分野에서는 物品分類를 위한 解釋原則을 마련하고 있고 10餘萬個以上の 物品에 대한 品目別固有코드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實際 其他로 分類되는 物品이 全體의 1/4에⁷⁾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現行 積荷保險의 品目分類方法은 確實히 改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貨物의 特性및 物動量등의 考慮 不充分

現行 品目分類는 貨物의 特性이나, 當該貨物의 物動量등의 與件을 考慮한 分類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앞서도 指摘하였듯이 76年以後 必要할 경우 特定品目の 追加 또는 品目群의 調整 등 局部的인 問題만 처리하였지 全般的인 品目分類에 대한 檢討는 아직 없었다는 事實에 基因한다고 볼수 있다.

두말할 必要도 없이 品目에 따라서는 當該品目の 性格이나 物動量 등을 考慮할 때 別途로 分類하여 管理하는 것이 危險分類的 目的에도 附合하고 妥當할 것이다. 勿論 認可料率制下에서는 앞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料率의 硬直性을 갖게되고 따라서 狀

7) HS概要및 解説(貿易協會 1987)

況變化에 신속성있게 對處하기 어렵다는 점을 認定한다 해도 적어도 定期的으로 危險度 및 物動量變化를 把握하여 品目分類의 調整·補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할것이다.

라. 他分野에서의 分類方法과의 差異

現行 積荷保險에서의 品目分類方法은 他分野 즉 關稅 및 貿易등에서의 分類方式과 相異한데서 나타나는 不便이다. 즉 他分野의 關係機關 등에서 作成·發表되는 統計를 利用하거나, 또는 保險統計와 이들 統計를 比較·分析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勿論 保險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危險度を 가장 重要視하여 分類하여야 할 것이나, 可能的 部分까지는 關聯分野의 分類方式을 檢討하여 受容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要求되고 있다.

第4章 新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

1988年 1月 1일부터 우리나라도 關稅分野에서 그동안 使用하여 오던 CCCN(關稅協力理事會 品目分類表: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대신 新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를 導入施行하게 되었다. 同商品分類制度, 略稱 HS制度는 多岐化되어 있는 商品分類制度를 國際적으로 統一한 것으로 制定目的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連關分野인 貿易, 運送, 保險 倉庫등에서도 同制度의 利用을 권고하고 있다.

1. HS의 概要

HS란 CCCN을 根幹으로 하여 既存의 여러 商品分類方式을 吸收·補完한 新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로서 協約에 따라 HS로 略稱하고 있다.

가. HS의 制定背景

HS의 制定背景으로는

첫째, 統一된 商品分類制度가 없어 分野別로 分類體系가 多岐化되어 있어 이를 統一시킬 必要性이 要請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國際間 去來에 있어 商品은 關稅의 賦課나, 貿易統計의 計上을 위하여 分類되는 것 외에 運送過程에 있어서도 運賃의 適用이라든지, 統計의 資料把握을 위하여 分類되고 있다. 한편 保險, 倉庫 등의 分野에서도 上記와 類似的한 目的에 의하여, 商品分類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각 分野別로 獨自的인 分類表를 가지고 있어 貨物이 移動할때마다, 그 分類를 變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多樣한 分類體系에 따른 去來上의 時間과 經費의 不必要한 浪費를 最少化하려는 意圖에서 모든 分野에서 共通적으로 使用할 수 있는 品目表의 開發必要性이 抬頭되게 된 것이다. 分野別 品目分類의 例를 든다면, 關稅分野에서는 CCCN, 貿易分野에서는 SITC 航空의 경우는 WACCC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關稅分野에서는 國際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品目表로서 關稅協力理事會가 管理하고 있는 CCCN이 있는데, 세계 150餘國에서 關稅率表의 基本品目分類表로서 使用하고 있음에도 美國이나 캐나다 등 主要 貿易國이 이를 使用치 않고 獨自的인 商品分類表(美國: TSUSA, 캐나다: CTC)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世界 貿易關係者들에게 새로운 品目分類表 開發을 서두르게끔 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HS協約의 前文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國際貿易의 圓滑化를 위하여 國際 貿易上의 資料의 蒐集·比較 및 分析을 容易하게 할 必要性 提起

· 技術 및 國際貿易 패턴의 變化에 따라 現行 CCCN에 대한 광범위한 調整이 必要

· 國際貿易에 관한 교섭을 위하여는 正確하고 比較可能的 資料가 重要

나. HS의 特色

(1) 多目的 品目分類表

HS는 運送 가능한 모든 物品에 適用될 수 있는 6單位 多目的 品目分類表이다. 6單位 코드 5,019個로 構成된 HS品目分類表는 그 統一的 適用을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物品定義 및 分類原則을 包含하고 있는데, 이러한 分類原則은 5,019個 品目群이 多目的이라는 性格을 나타내는 것이다.

(2) 體系的 品目分類表

HS는 Heading 및 Subheading, 解釋에 관한 通則, 部 및 類의 註와 같이, 形成된 結合體로서 物品의 體系的·統一的 分類指針을 나타내고 있다.

다. 構造

HS는

· HS의 解釋에 관한 通則

· 部 및 類註

· 體系的 順序로 配列된 Heading 및 Subheading 目錄으로 構成되어 있다.

(1) 解釋에 관한 通則

特定品目は 쉽고 명료하게 하나의 Heading으로 分類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規則을 마련한 것이다.

(2) 部 및 類註

特定 部 및 類의 맨 앞에는 보통 部註 또는 類註가 있는데 이는 解釋에 관한 通則과 마찬가지로 HS品目分類와 同等한 效力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註의 機能은 部, 類 및 Heading, Subheading의 正確한 範圍와 限界를 決定하는데 있다.

(3) Heading

HS의 Heading은 21個部 및 96個類로 나뉘어져 있다. CCCN은 21部 99類로 되어 있으나, HS에서는 98類, 99類를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各國으로 하여금, 自由롭게 使用할 수 있도록 餘分을 남겨둔 것이며, 77類는 빈채로 두었는데 이것은 본래 마그네슘, 베릴륨 등이 있었으나 貿易量이 적어 81類에 統合되어 비게 된 것으로 장차 새로운 必要가 發生하였을 경우 이곳을 利用하도록 한 것이다.

· 1部(1類~5類)는 動物 및 動物의 製品이 包含되나, 特定 油脂(15類) 및 가죽, 모피(8部) 등은 除外된다.

· 2部(6類~14類)는 植物性 製品이 分類되나, 木材(44類)는 除外된다.

※ 1~2部の 生産物은 特定段階以上の 加工을 거치지 않은 物品만이 分類되기 때문에 調製 또는 加工된 製品은 4部에 分類

· 3部(15類)는 動·植物性 油脂

· 4部(16類~24類)는 음료, 알콜 및 3部에 包含되지 아니한 것 分類

· 5部(25類~27類)는 鑛物性 生産品

· 6部(28類~38類)는 化學 및 關聯製品

· 7部(39類~40類)는 프라스틱 및 關聯製品과 고무 및 關聯製品

· 8部(41類~43類)는 特定動物의 製品을 分類

· 9部(44類~46類)는 主로 植物性 製品을 分類

· 10部(47類~49類)는 植物性 製品中 9部에 包含되지 아니한 것을 分類

· 11部(50類~63類)는 織物에 관한 것을 分類

· 12部(64類~67類)는 사람이 着用하거나 휴대하는 物品

· 13部(68類~70類)는 鑛物性 製品

- 14부(71類類)는 寶石類 및 鑄貨(Coin)
- 15부(72類~83類)에는 卑金屬 및 卑金屬製品
- 16부(84類~85類)에는 機械類 및 電氣機器를 分類
- 17부(86類~89類)는 車輛, 船舶, 航空機 등을 分類
- 18부(90類~92類)는 精密機器類 등
- 19부(93類)는 武器 및 彈藥
- 20부(94類~96類)는 家具類, 레저用品
- 21부(97類)에는 藝術品 및 骨董品을 分類

2. CCCN分類과의 比較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CCCN은 通則과 21부 99類로 되어 있으나, HS는 98~99類를 削除하였으며, 77類는 空으로 두었다. 따라서 21부 97類이나 實質的으로는 21부 96類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號에 있어서는 CCCN에는 4單位 1,011個이나, HS에서는 4單位 1,241個, 그리고 이중 貿易量이 많은 物品은 6單位로 分類하여 6單位 5,019個가 된다.

이를 나타내면 <表2-1>, <表2-2> 와 같다.

<表2-1> CCCN과 HS

	CCCN	HS
基本構造	21부 99類 1,011號(4單位)	21부 97類 1,241號(4單位) 5,019號(6單位)
使用國家	150개국	미국, 캐나다 등 추가
用 途	關稅	關稅, 貿易 運送, 保險 등

<表2-2> 品目分類比較表(CCCN과 HS)例

CCCN	HS	品 名
01.01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 * 말 0101.11 ** 종마

01.02	0101.19	** 기타
	0101.20	* 당나귀
		소
	0102.10	* 종우
01.03	0102.90	* 기타
	0103.10	돼지
		* 종돈
	0103.91	* 기타
01.04	0103.92	** 1마리의 중량이 50kg 미만인것
		** 1마리의 중량이 50kg 이상인것
		면양과 산양
	0104.10	* 면양
01.05	0104.20	* 산양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및 기
		나아새에 한한다.)
	0105.11	* 1마리의 중량이 185g 이하의것
01.06	0105.19	** 닭
		** 기타
	0105.91	* 기타
	0105.99	** 닭
		** 기타
	0106.00	기타의 산동물

※ HS解説(關稅研究所刊)

3. 積荷保險 品目分類과의 比較

가. 基本構造

HS 品目分類에서의 部는 大分類, 類는 中分類, 號를 小分類로 보고 積荷保險에서의 品目分類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HS	積荷保險
大分類	21부	20品目群 ⁸⁾
中分類	97類	44個
小分類	5,019號	119個

나. 品目別 比較

HS와 現行 積荷保險의 品目分類를 HS體系를 中心으로 하여 比較하여 보면 <表 3> 과 같다.

8) 積荷保險에서의 20品目群은 一般貨物 17個品目群과 其他貨物中 品目分類로 볼수없는 借款契約, 共產圈 通過貨物, 軍需物資, 防衛産業物資를 除外한 3個品目群임.

H.S와 積荷保險 品目分類 比較

(表3)

	H·S 품목분류체계	적하보험 품목분류	비 고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산동물	· 212-2 (집승류), 212-3(파충류)의 일부 212-4(조 류)	· 212-5(어류)는 제3 류로 212-1(식물)은 제6류로
	제2류 육과 식용설육	· 210-4(MEAT & FISH)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 물	· 215-5(어류)의 일부	
	제4류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계기한 것 또는 포함되는 것 이외의 식용동물성 생산품	· 210-3(기호품, 야채, 과일류)의 일부	· 210-3 BUTTER, EGGS, MILK등
	제5류 따로 계기한 것 또는 포함되는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 201-1(섬유및수모류)및 303-1(잡 화류)의 일부	· 201-1중 동물의 털 과 303-1중 가발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의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및 장식용의 잎	· 212-1(식물)	· 212-1중 전체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과경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류 또는 멜론의 껍 질	· 210-3(기호품, 야채, 과일류)의 일부	· 210-3중 야채류
	제9류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	· 210-3(기호품, 야채, 과일류)의 일부	· 210-3중 과일류
	제10류 곡류	· 210-3(기호품, 야채, 과일류)의 일부	· 210-3중 기호품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맥아·전분·이눌린 및 위 트글루우덴	· 203-1(곡물류 및 유채류)의 일부	· 203-1 전부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각종의 종자와 과실·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짚과 사료용 식물	· 210-1(채분, 설탕, 소금)의 일부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203-1(곡물류 및 유채류)및 210-3 (기호품, 야채, 과일류), 303-1 (잡화)의 일부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따로 계기한 것 또는 포함되는 것 이외의 식물성 생산품	· 208-1(유지류)	
	：	· 203-1(곡물류 및 유채류), 204-1 (원목) 208-1(유지류), 303-1(잡 화)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 기·영화용기기·계 측기·정밀기기와 의 료용기기, 시계,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16-2(가정용 전기제품), 216-3 (산업용 전기제품)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 216-2(시계)	
제20부 잡품	제92류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216-3(건반악기류), 303-9(기타악 기)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 209-3(폭발물), 303-1(총포탄)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 션 기타 이들과 유사한 물품, 따로 규정 또는 분류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 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물 품 및 조립식의 건축물	· 217-1(유리), 303-1(잡화)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303-1(완구)	
	제96류 잡품	· 303-1(잡화)	
제21부 예술품·수집품 및 골 동품	제97류 예술품·수집품 및 골동품	· 303-1(회화)	

第5章 積荷保險 品目分類 改善方案

지금까지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體系 및 問題點 그리고 關稅分野에서의 商品分類方式인 HS를 紹介 하고 積荷保險의 品目分類를 比較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提示할 수 있는 하나의 方案으로는 現行 積荷保險의 品目分類를 HS分類方式에 따라 全面改編하는 것이 業務의 便宜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分野別 特性을 考慮치 아니한, 즉, 保險에서 가장 重要視되는 危險度를 無視할 수 있을 것이며 副次的 問題로는 品目別 料率調整의 問題를 解決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可能하고도 合理的인 方法은 HS方式을 根幹으로 하되 積荷保險의 特性을 고려하고 지금까지 提起된 問題點을 最少化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2장에서 提起한 問題點을 거의 解決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改善方向 및 調整案을 提示하여 보기로 한다.

1. 改善方向

가. 品目分類基準 또는 解釋原則의 制定

品目分類基準이나 分類를 위한 解釋原則을 制定하고 必要한 경우 各 品目群別로 註를 두어 品目分類上의 明確과 料率適用上의 混亂을 除去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HS의 解釋에 관한 通則(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S)에서는 通則 1號에서 6號까지 品目分類에 대한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通則1은 品目分類의 大前提로 各部, 各類, 各號의 註에 의하여 決定하고 따로 規定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通則2내지 6에서 規定하는 바에 따른다.

通則2-가에서는 不完全 또는 未完成物品이, 完全하거나 完成物品의 本質의 特性을 갖는 경우에는

包含·適用되며 通則 2-나에서는 材料 또는 物質에 대해 規定한 경우 다른 材料나 物質을 混合結合한 物品도 包含하도록 되어있다.

通則3에서는 通則2에서 同一한 物品이 둘 이상의 號에 分類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品目分類에 대해 規定하고 있다. 즉 分類의 優先順位는 狹意表現號→主要特性號→最終號이다. 3-가에서는 物品에 대해 가장 협의로 表現한 號가 一般的으로 表現한 號보다 우선하여 分類한다는 것이다. 3-나는 3-가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것은 可能的 限 이들 物品에 本質의인 特性을 부여하는 材料, 또는 構成要素에 의해 分類하며 3-다는 上記가 또는 나에 의하여 分類할 수 없는 것은 同一하게 分類가 可能的 號中에서 그 順序上 最終號에 分類한다.

通則 4는 通則 1내지 3의 規定에 의하여 分類할 수 없는 物品은 당해 物品과 가장 類似한 物品이 해당하는 號에 分類하도록 하고 있다.

通則5는 物品의 包裝用으로 사용되는 包裝材料와 包裝容器的 分類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容器으로서의 本質의인 特性을 가지는 경우외에는 內容物의 分類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通則6은 小號分類는 號(4單位)分類에 適用하는 上記 分類通則을 適用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HS에서는 品目分類에 대한 解釋原則은 勿論, 各部, 各類別로 必要한 경우 註를 두어 分類上의 難點을 解決하고 있다. 따라서 積荷保險의 品目分類에 있어서도 이를 參考로 하여 適切한 分類基準이나 解釋原則, 그리고 더 나아가 品目群別 註를 마련하여 分類上의 混亂이나 異見을 除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向後 積荷保險에서의 分類基準에의 參考를 위해 HS의 分類原則을 圖解한다면 다음과 같다.

品目分類通則 圖解

통칙1.

각호 용어 및 부·류의 주 규정에 의한 분류

※ 참조
부·주·
절의 표제

통칙2

각호의 계기된 물품, 재료, 물질의 확대 분류
가. 물품: 완전,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미완성, 불안전, 미조립, 분해물품 포함
나. 재료·물질: 혼합물, 복합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 것 포함

분류불가

2 이상호에 분류되는 경우

가. 가장협의 표현호에 분류

분류불가

· 혼합물
· 복합물(상이한 재료, 구성 요소)
· 소매용 세트

통칙3.

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 요소에 분류

성질·용적·수량·가격·구성재료의 역할

분류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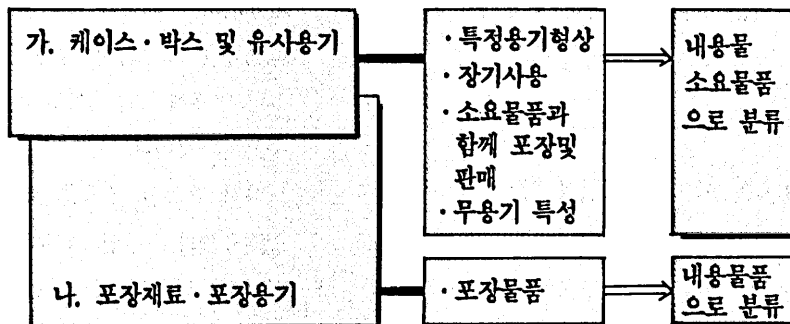
다.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

분류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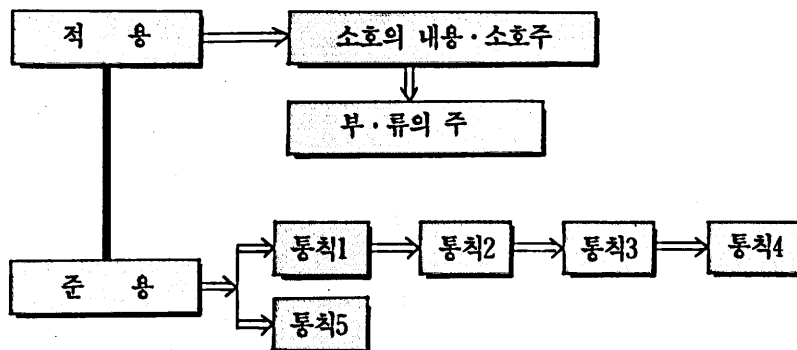
통칙4.

유사물품의 호에 분류

통칙5.



통칙6. 소호의 분류



나. 品目羅列方式의 止揚

現行과 같은 貨物群別 品目羅列方式을 止揚하고 HS分類方式과 같이 關聯類및 이에 해당하는 코드를 賦與하여, 料率書를 單純化시키고, 分類가 容易하도록 補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類似統計와 의 比較·分析도 容易하여지고, 品目別코드管理로 實績管理가 可能해져 向後 必要時 再分類및 改善·補完이 간단하여 질 것이다.

다.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上의 大分類는 可能한 限 現行 體系를 維持하되 HS方式에 따라, 原材料, 半製品, 製品은 可能한 限 同一品目群(大分類)

으로 分類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이다.

라. 適用料率은 同一하면서, 相異한 品目群(中分類)으로 分類되어 있고, 그 區分이 어려운 部分(例, 化工品, 機械類등)은 吸收, 統合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마. 現行 其他貨物로 分類되어 있는 貨幣, 貴金屬, 雜貨등은 一般貨物로 分類하여 管理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바 物動量등을 考慮하여 分類를 伸縮性있게 運用하여야 할 것이다. 즉 物動量이 큰 品目에 대하여는 必要한 경우 別途의 分類(中分類 또는 小分類)를

요하며, 相對的으로 그렇지 못한 品目에 대해서는 他分類에 吸收·統合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2. 調整案

가. 分類基準 또는 解釋原則의 制定

品目分類基準이나, 解釋原則 그리고 各品目群別 必要한 註登의 新設問題는 積荷保險 分類現況 및 特性등을 고려하고 HS制度 등 他分類體制에서의 分類基準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 妥當하고 合理的인 基準의 提示가 可能할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는 品目分類調整案의 導入, 施行後 接近하여 나가기로 한다.

나. 品目分類 調整案

앞에서 提示한 改善方向中, “나”이하의 事項을 可能한 범위내에서 反映하고, 現行 分類體系를 最大限 受容하여 料率適用이나, 分類上의 便宜를 도모한 品目分類 調整案을 作成 提示하면 별표와 같다. 다만 同分類는 向後 合理的이고 公正·妥當한 品目分類를 위한 整地作成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자 한다.

第6章 結論

지금까지 現行 積荷保險 品目分類上의 問題點과 新國際統一商品分類制度(HS)와의 比較·檢討 및 이에 대한 改善方向, 그리고 獨立的인 品目分類調整案을 提示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個人的 觀

點에서 본 分類方法의 提示에 不過하다. 따라서 危險分類의 原則이나 保險事業者의 現實인 業務處理面등을 고려하여 많은 研究와 檢討가 要求되며 그런 연후에 效率的이고 現實인 改善案이 導出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提示된 調整案은 第2章에서 살펴본 危險分類의 基準인 損害의 頻度, 크기, 그리고 過去의 經驗 및 多數의 同質危險確保라는 側面을 充分히 고려한 合理的인 分類는 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 理由는 品目別 實績管理가 最近에 와서야 可能하였고, 이에따라, 危險分類의 原則을 充足시킬만한 分析結果가 아직까지 確保되지 못하고 있는데 基因한다.

그러나 現行 品目分類가 料率適用을 둘러싸고 많은 紛爭의 素地를 안고 있다는 側面에서 볼때, 分類의 單純化와 便宜性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肯定的인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向後 未盡한 部分에 대한 改善을 위한 準備로서도 調整案의 必要性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提示된 品目分類調整案을 參考로 하여 研究·檢討를 거쳐 조속한 時日內에 어떤 進展이 있어야 할것이다. 더욱이 保險市場 開放化 및 料率自律化의 趨勢가 加速化되고 있음을 고려할때 危險에 따른 適正한 分類 및 이에 따른 合理的인 料率適用은 매우 重要한 問題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의 作成意義를 찾고자 하며, 未盡한 部分에 대하여는 後日을 期하기로 한다.

품목분류조정(안)

<별표>

현행	조정(안)	검토의견
201 섬유류 및 수모(FIBRE WOOL ETC.) 201-01 (섬유류) 직제품(면, 모, 화학섬유) 자수원단 CARPET 합성직물 견직물(견직외류포함) DOWN & FEATHER 201-02 (원면) RAW COTTON 201-03 (생사) RAW SILK(INCL. YARN, THREAD & WASTE) 201-04 (WOOL) WOOL(GREASY OR SCOUR-ED) WOOL TOPS WOOL WASTE 202 모피 및 피혁류(FUR, HIDE & SKIN) 202-01 RAW HIDE, SKIN, FUR, LEATHER 203 곡물류 및 유채류(GRAIN & OIL SEEDS) GRAIN:BARLEY BROWN RICE COFFEE BEAN CACAO BEAN MAIZE OIL SEEDS:CASTOR SEEDS COPRA COTTON SEEDS 204 임농산물(곡물류제외): AGRICULTURE & FOREST PRODUCTS 204-1 () LOGS, BAMBOO (PRODUCTS 제외) 204-02 () HARD BOARD, PLYWOOD, VENEER, TIMBER	201 방직용 섬유와 그제품 201-01 (원섬유, 원사, 섬유제품 등) HS 50류-63류 HS CODE 50.01-63.10 단, 201-02, 201-03, 201-04에서 명기되어 분류된 품목은 제외 202-02 (원면: RAW COTTON) HS 52류중 1항 HS CODE 52.01 201-03 (생사: RAW SILK) HS 50류중 HS CODE 50.01-50.06 HS CODE 50.07(직물)은 201-01로분류 201-04(양모, 섬수모, 조수모) HS 51류중 HS CODE 51.01-51.05 HS CODE 51.06-51.13은 201-01로 분류 202 원피, 가죽, 모피등 이들의 제품 202-01 (원피, 모피 및 가죽) HS 41류 CODE 41.01-41.11 HS 43류중 CODE 43.01-43.02 202-02 (가죽제품) HS 42류 CODE 42.01-42.06 HS 43류중 CODE 43.03-43.04 203 곡물 및 채유용 종자 HS 10류 CODE 10.01-10.08 HS 12류 CODE 12.01-12.14 204 목재와 그제품, 식물성 재료 204-01(원목, 대나무 등) HS 14류중 14.01-14.02 HS 44류중 CODE 44.01-44.07 단44.02(목탄)는 제외 204-02 (합판) HS 44류중 CODE 44.08-44.13	· 타 품목군에서 특개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201-01로 분류토록 함으로써 요율적용상의 혼란 제거 · 품목나열방식이 아니고, HS품목코드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요율서의 단순화 · 현행과 동, HS CODE 명기 · 현행은 양모만을 말하나, 섬수모(산양, 토끼 등의 모) 조수모(기타 수모)를 포함 분류함. 단, 이들의 사(絲)는 모두 201-01로 분류함 · 현행 요율서상 가죽제품은 잡화로 분류하고 있으나 HS 분류체제를 반영하여 202품목군으로 분류 하되 202-02항을 신설하여 운용하기로 함 · 적용 요율은 현행 잡화적용 요율 · 적용특별상의 RAW HIDE & RAW SKIN에 대한 인수조건제한 및 A.P적용문제가 있으므로 HS CODE 를 명기하기로 함(HS CODE 41.01-41.03) · HS 12류중 12.10-12.14에 계기된 품목에 대하여는 타 품목군과의 경합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요 · 목탄(HS CODE 44.02)은 현행 요율서상 석탄류에 분류

현행	조정(안)	검토의견
204-03 (고무) CRUDE RUBBER (SYNTHETIC RUBBER, NATURAL RUBBER, SILI- CON RUBBER 포함)	204-03 (목재제품) HS 44류중 CODE 44.14-44.21 HS 45류 CODE (45.01-45.04)	· 목재제품항을 신설하고 요율은 잡화요율 적용 단, 가구류는 HS 분류상으로도 타품목군에서 분 류되고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잡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4-04 () LEAF TOBACCO	204-04 (고무) HS 40류중 CODE 40.01-40.10 204-05 (고무제품) HS 40류중 CODE 40.11-40.17	· HS 40류(고무와 그제품)를 재료로서의 고무와 그제품을 분류 고무제품군을 신설·적용요율은 현행 잡화요율 적용
205 펄프 및 지류(PULP & PAPER) 205-01 (펄프) PULP, RAYON PULP SULPHATE PULP	204-06 (잎담배 및 잎담배 부산물) HS 24류중 CODE 24.01	· 항번호 변경 · HS 24류(담배와 제조담배대공물)중 24.01을 제 외한 기타담배는 현행 요율서 210-03으로 분류
205-02 (지) PAPER NEWS PRINTING PAPER ROLLED PAPER WALL PAPER PAPER WASTE (PAPER PRODUCTS는 제외) 복사지	205 펄프, 지(紙), 지제품, 인쇄물 205-01 (펄프류) HS 47류중 CODE 47.01-47.06 단, CODE 47.07은 205-02로 분류 205-02 (지류) HS 47류중 CODE 48.47-07(PAPER WASTE) HS 48류 CODE 48.01-48.16	· HS 47류(펄프, 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중 PAPER WASTE(HS CODE 47.07)는 현행 요율서상 지류(205-02)로 분류되어 있음. · HS 48류중 제종류(HA CODE 48.17-48.23)는 205-03(지제품, 인쇄물)으로 분류
206 비료 및 사료(FERTILIZER & FEED) 206-01(비료) FERTILIZER(CHILIAN NI- TRATE PHOSPHATE ROCK POTASSIUM) 206-02 (사료) BLOOD MEAL BONE MEAL SOYA BEAN MEAL	205-03 (지제품, 인쇄물) HS 48류중 CODE 48.17-48.23 HS 49류 CODE 49.01-49.11	· 205-03 품목군 신설 적용요율은 현행 잡화요율
207 유류(OIL) 207-1 () CRUDE OIL HEAVY OIL LIGHT OIL BURNING OIL COAL-TAR PITCH LUBRICANTS NAPHTHA	206 비료 및 사료 206-01 (사료) HS 31류 CODE 31.01-31.05 206-02 (사료) HS 23류 CODE 23.01-23.09	· HS 23류(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조제사 료)
208 유지류(OIL & FATS) 208-01 () FISH OIL LARD	207 유류 207-01 (석유, 역청유) HS 27류중 CODE 27.09-27.01	· COAL-TAR PITCH는 현행 요율서상 유류로 분 류하고 있으나 형태상 고체로 운송되는 점에서 209(화공종류)군으로 분류함이 타당한바, 재검토 요 COAL-TAR PITCH→27.08
	207 유류 207-01 (석유, 역청유) HS 27류중 CODE 27.09-27.01	· 방사성 동위원소, 핵연료 등은 유류와는 성질이 다르며 오히려 화공종류에 가깝고, HS분류상으 로도 유류에 포함시키지 않고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품목군 변경(207→209)
	208 동식물성유지 208-01 (유지 및 분해생산물) HS 15류 CODE 15.01-15.22	

현행	조정(안)	검토의견
TUNG OIL 209 화공품 및 의약품(CHEMICAL & PHARMACEUTICAL) 209-01 (액체 화공품) ETHYLENE LPG OTHER LIQUID CHEMICALS 209-02 (고체 화공품) ASPHALT DYESTUFF OTHER SOLID CHEMICALS	209 화학공업품, 의약품, 방사성 동위원소 209-01 (화학공업품, 의약품) HS 28류-30류 HS 30류 HS 32류-39류 HS 27류중 27.08(COALTAR PITCH) 209-02 (핵연료, 방사성 동위원소) HS 28류중 CODE 28.44-28.45	- 현행 요율서상 액체화공품과 고체화공품을 구분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구별이 어렵고 또 기본요율은 모두 동일하므로 현행 4개의 품목군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요구됨 - 화물의 특성에 따른 인수조건, AP적용 등의 문제는 적용특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유도 - 화공품 및 의약품은 HS 분류상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가 포함되고 또 그중 일부는 타품목군과 결합되므로 조정(안)의 품목군중 제외품목 결정은 재검토요
210 식료품 및 기호품(FOODSTUFF & TASTES) 210-03 () BUTTER CANNED GOOD CHEWING GUM CIGARETTE(IN CASE) COFFEE, COCOA DRIED MARINE PRODUCTS EGGS, FRUITS GINSENG & PRODUCTS LIQUOR AND BEVERAGE TEA(IN TIN-LINED CASE) VEGETABLE(ONION, GARLIC, RED CHILE 포함) SOYBEAN SAUCE SOYBEAN PASTE PEPPER SPICERY 식료품첨가물	210 식품류 210-01 식품류 HS 4류(낙농품, 식용동물성 생산물) CODE 04.01-04.10 HS 7류(식용의 채소) CODE 07.01-07.14 HS 8류(식용의 과일) CODE 08.01-08.14 HS 9류(커피, 차 향신료) CODE 09.01-09.10 HS 13류(락, 검, 식물성 액즙, 엑스) CODE 13.01-13.02 HS 18류(코코아와 그 제품) CODE 18.01-18.06 HS 17류(당류와 설탕과자)중 CODE 17.04 HS 19류(백분조제품) CODE 19.01-19.05 HS 20류(채소, 과일, 식물조제품) CODE 20.04-20.09 HS 21류(각종 의 조제식료품) CODE 21.01-21.06 HS 22류(음료, 알코올) CODE 22.01-22.09 기타 210-02 및 210-03, 210-04에서 특제되지않은 식품류는 모두 포함 210-02 (백분 및 가공곡물류) HS 11류(제분공업의 생산물) CODE 11.01-11.04 HS 17류중 CODE 17.02-17.03(17.04는 제외) 210-03 (RAW SUGAR) HS 17류중 CODE 17.01 210-04 (SALT) HS 25류 CODE 25.01 210-05 (육류, 어류)	- 현행 요율서 210-03항은 식품류에 있어 명기되지 않은 모든 품목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201-01로 항목변경하고 타군에서 특제하지 않은 모든 식품류를 포함토록 함 - 항목변경 210-01(현행) → 210-02 210-02(현행) → 210-03 210-03(현행) → 210-01 210-04(현행) → 210-04 - SALT는 210-04항 신설 분류토록 변경 - 향신설
210-01 () CORN STARCH GRANULATED SUGAR SALT TAPIOCA WHEAT FLOUR MOLASSES 210-03 (원 당) RAW SUGAR		
210-04 ()		

현행	조정(안)	검토의견
MEAT & FISH	HS 2류(육과 식용설육) CODE 02.01-02.10 HS 3류(어류, 갑각류, 기타)중 CODE 03.02-03.07 단, DRIED PRODUCTS 및 CANNED GOODS은 제외 식 제	• 03.01(황어)은 다품목군에서 분류 • DRIED PRODUCTS 및 CANNED GOODS은 210 품목군에서 분류 • 210-04(MEAT & FISH)항과도 경합되며, 또 동 보험은 기간보험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처리가 요구됨
211 어획물류(MARINE PRODUCTS)		
212 생물(LIVING THINGS)	212 생·동물	
212-01(PLANT, 생과, 화초)	212-01 (식물) HS 6류(산수목과 기타식물) CODE 06.01-06.04	
212-02 () BEAR, BEEF, CATTLE, BULL, CHINCHILLA, COW, ELAND, ELEPHANT, GIRAFFE, HOLSTEIN, HORSE, LION, MILK COW, MUNTJAC, PET, PIG(LIVE SWINE, BERKSHIRE, LANDRACE, HAMPSHIRE), PUMAR, RABBITS, RIDING HORSE, SQUIRREL, TIGER, WALLABY, ZEBRA	212-03 (동물, 가축류) HS 1류(산동물)중 CODE 01.01-01.04 CODE 01.06중 212-03 및 212-04에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기타 동물은 모두 여기에 포함	
212-03 () SNAKES, (ANACONDA, CAIMAN, CONSTRICTOR, GARRIAL, KING COBRA, MONITOR, TAIWAN COBRA), 갯지렁이(SALTED PATENT) 지렁이(RED EARTHWORM OR EARTHWORM)	212-03 (파충류, 곤충류) HS 1류 CODE 01.06중 파충류 및 곤충류	
212-04 () BIRDS, CHICKEN, CRANE, DUCK, PEA-FOWL, POULTRY	212-04 (조류, 가금류) HS 1류 CODE 01.05 CODE 01.06중 조류	
212-05 () GLOBE FISH, FRESH WATER EEL, OYSTER SEED, SHRIMPS, TUNA FISH, TURTLE, 판상어	212-05 (황어) HS 3류(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중 CODE 03.01(황어) CODE 03.02-03.07중 살아있는 것은 본항으로 분류	
213 광산물(MINERALS)	213 광산물, 토석류, 시멘트	• 소금(HS CODE 25.01)은 213-03항을 신설분류(현행요율서상 210-01) • 시멘트(HS CODE 25.23)은 214-02로 분류 • HS 25류중 현행 요율서 217 품목군과 경합되는 품목은 재검토 요 • 26류중 우라늄광(HS CODE 26.12)은 방사성 동위원소와 유사하므로 재검토
213-1 () ANTIMONY ORE BAUXITE COPPER ORE SULPHUR(액체는 제외) 토사(고령토, 규조토, 모래, 자갈) CLAY COPPER CONCENTRATE	213-01 (광산물, 토석류) HS 25류중 다음을 제외 CODE 25.01(소금) CODE 25.23 (시멘트) HS 26류 CODE 26.01-26.21	
213-02 () CEMENT	312-02 (CEMENT) HS 25류 CODE 25.23	
214 석탄류(COAL)	214 석탄류	
214-01 () COAL	214-01 (석탄) HS 27류(광물성 연료 등)중	

천 행	조 정(안)	검 토 의 건
분품(원재료제외) 216-05 (PLANT, HEAVY EQUIPMENT) 철도용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항공기와 이들의 부분품/선박과 수상구조물 및 이들의 부분품/건설공사 및 항만 하역용 중장비 조립식 건물/CONTAINER/PLANT 시설용 기자재 217 유리 및 요업제품(GLASS & CERAMIC PRODUCTS) 217-01 () GLASS류 CARBON CATHODE BLOCK EMPTY BOTTLE FLUORESCENT CIRCLINE LAMP HOUSEHOLD BULB PORCELAIN STONE AND/OR GLASS ASH TRAY STONE PRODUCTS TILE 301 화폐, 귀금속 및 보석류(BANK NOTE & BULLIONS) 301-01 BANK NOITE(COIN 포함) BULLION(SILVER INGOT 포함) 귀금속 및 보석류 우표(채신부 발행) 유가증권(공사채, 주식 등) 설계도 302 이사화물(HOUSEHOLD GOODS) 302-01 HOUSEHOLD GOODS 303 잡화(MISCELLANEOUS) 303-01 가죽제품(인조가죽 포함) 고무제품 가발류(인모 포함) 래저용품 생활필수품 완구류 및 문구류 인쇄물류(PAPER PRODUCTION) 자개류 및 가구류 충기류 약세사리 합성수지제품 한약재 ARTIFICIAL FLOWER(DRY FLOWER포함) 약기류(건반악기 제외) 기타 잡화	217 유리 및 도자기류 217-01 HS 68류 CODE 68.01-68.15 HS 69류(도자기류) CODE 69.01-69.14 HS 70류(유리와 그 제품) CODE 70.01-70.20 218 화폐, 귀금속 HS 71류 CODE HS 97류중 CODE 97.04(우표 등) 219 잡화 타 품목군에서 분류되거나, 특 게되지 않은 모든 품목	89류 : 선박과 수상구조물 90류 : 광학기기, 계측기기, 정밀기기, 의료기기 91류 : 시계와 부품 92류 : 악기 및 부품 93류 : 무기, 총포탄 및 부품 • HS 68류중 제외품목 여부는 재검토 요 • 설계도 분류 검토 • 특수화물로 분류 검토 요